

의안번호	제 50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발의연월일	2020년 8월 26일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영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6
----------	-----

발의연월일 : 2020년 8월 26일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찬 성 자 : 박성원, 최경천, 김국기,
심기보, 이수완, 임동현 의원

1. 제안 이유

조례 제정 당시에는 충청북도 내 초등교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우수한 초등교사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더 이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으며,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33조의2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과 의무복무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나.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복무의무 및 장학금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68호

(2020. 8. 20. ~ 2020. 8. 24.)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생의 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복무의무 및 장학금의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1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1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5. 14] [충청북도조례 제3263호, 2010. 5.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충청북도립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4.>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청주교육대학교(이하 “청주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 중, 졸업 후 충청북도립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청주교대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0. 5. 14.>

제3조(장학생 수)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에서 매년 초등학교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장학금) ① 제2조에 따른 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0. 5. 14.>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0. 5. 14.>

제5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장래 초등학교 교사가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4.>

제6조(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이 청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는 계속하여 4년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5. 14.>

제7조(복무의무)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재학생 1학년, 2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4년
2. 재학생 3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3년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3.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

[전문개정 2010. 5. 14.]

제8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9조(장학금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개정 2010. 5. 14.>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자퇴한 때
3. 공무원 임용 결정사유가 발생한 때
4.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때
5.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때

제10조(장학금의 반납)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한 때

[전문개정 2010. 5. 14.]

제11조(협약체결) 교육감은 청주교대 총장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매년 협약을 체결한다.

제12조(소요재원) 장학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63호,2010. 5. 1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미첨부 사유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주 의원